

[일련번호 : 20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◆◆동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◆◆동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 등에 따라 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관리 점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 (보건복지부)에 따르면 무연고 장기입원자,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, 치매노인, 18세 미만 아동 등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사용·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고,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·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‘본인확인서’를 제출받고 급여관리자 지정 및 급여사용실태 점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급여관리자 지정 시에는 ‘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’(서식38호) 및 ‘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서’(서식43호) 제출 등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, 동장은 급여관리 점검 계획에 따라 현금인출 여부, 입·출급 내역 적정성, 지출내역 기록 및 영수증 일치 여부, 급여 주요 사용처 및 타인급여 인출·사용여부 등을 반기별 또는 연 1회 점검한 후 ‘기초생활보장수급자

급여관리자(본인) 급여관리실태 점검표'(서식39호)를 작성하여야 하며,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의사무능력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수급자 본인의 생계유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매년 반기별 또는 연 1회 점검해야하며,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시정,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, ◆◆동은 감사 대상기간동안 아래 표와 같이 증빙서류 미첨부, 급여관리자의 타목적 사용 등 수급권 침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도 별도 조치없이 점검결과 적정 처리하는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부적정 내역 - 세부내역 별도송부

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 5. 조치할 사항

#### ◆◆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 관리·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